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1.(수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
및 운영 조례안
[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51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우리 구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·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능 (안 제2조)
 -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은 주요 정책 결정,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, 사회적 쟁점 사안, 새로운 정책 건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.
- 나. 구성 (안 제3조)
 - 자문단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, 기업 경영인, 5급 이상 퇴직공무원 및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단장 1명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함.
- 다.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(안 제4~7조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 연임할 수 있음. 단 전체 임기는 구청장의 임기에 맞춰 만료됨.
-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필요 시 요건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.
-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적 자문하고, 자문위원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 면담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.

라. 행정지원 및 수당 등 (안 제8~11조)

- 간사 기획업무 부서장, 서기 기획업무 팀장이 맡음
-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 2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 2에 의거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 금천구미래도시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하였음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에 금천구미래도시정책자문단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

- 안 제3조에 자문단의 구성과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다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쟁점사안 및 구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자로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
-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의 정책결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자문단의 설치는 타당성이 있으나
- 자문단 구성 시 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한 자문단 구성이 요구되며 향후 자문단의 활동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
- 또한 경비성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 내실 있는 자문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
붙임 : 관계법령 1부.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
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
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
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
운영할 수 있다.